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2. 6. .
제안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안연월일 : 2022. 6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조례명을 수정하고 올바른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적법하고 알기 쉬운 조례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 내용의 올바른 반영을 위한 조례명 수정
- 올바른 띄어쓰기 반영 등(안 제1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해당없음

구미시의회 조례 제 호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목 “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회기와 그”를 “회의 소집 및 회기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)”을 “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사항외”를 “사항 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	<u>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53조, 제54조,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의 <u>회기와 그</u>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4조(집회일)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 1. 2. (생략) 제5조(<u>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</u> 등) ① ~ ③ (생략) 제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<u>사항외</u>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회의 소집 및 회기</u> ----- ----- -----. 제4조(집회일) ----- --- <u>각 호</u>-----.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제5조(<u>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</u>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제6조(준용규정) ----- -- <u>사항 외</u>----- ----- -----.